



## 2015학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6. 1. 11
위원정수 : 9명	재적위원 : 9명

1. 일 시 : 2016년 1월 25일(월) 오후 2시

2. 장 소 : DIT 본관 2층 소회의실

3. 참석위원 : 8 명(위원장 : 서영호)

위 원 : 김석철, 신창욱, 장기효, 장윤식, 문정민, 이성화, 김근모)

4. 불참위원 : 1 명(위 원 : 이성률)

5. 참석교직원 : 2명(간사 기획부장 조정우, 서기 기획부 홍성표)

6. 안 건

제1호 의안) 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제2호 의안)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

제3호 의안)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안) 심의

제4호 의안) 2016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

제5호 의안) 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록 간서명 추천

7. 회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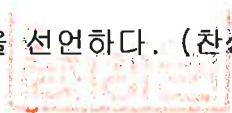
<간서명>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이성화 위원
	서영호	김석철	이성화

## 가. 개회

- 서영호 위원장이 9명 중의 재적위원 중 8명 참석으로 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2015학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 제1호 의안) 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서영호 위원장이 2015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결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등록금 확정 및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설명하다.
- 기획부 조정우 부장이 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개요를 설명하다.
  - 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예산서(안)
- 서영호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 서영호 위원장이 전 위원 동의에 의하여 제1호 의안인 2015 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8, 반대:0)



## 제2호 의안)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

- 기획부 조정우 부장이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과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 장기효 위원이 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경 대비 감소된 등록금회계의 수입과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대하여 질의하다.
- 조정우 간사가 이에 대하여 입학정원 편제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나 전년 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올라갔으며, 현 2016 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급률을 올릴 것이라고 설명하다.

<간서명>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이성화 위원
	서영호	김석철	이성화

-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서영호 위원장이 전위원회의 동의로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8, 반대:0)

### 제3호 의안)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임여금 처리 원칙 심의

- 기획부 조정우 부장이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임여금이 발생할 경우 임여금 처리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다.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이월금) 및 이월금 정의와 종류
  - 교비회계 임여금 발생 시 처리원칙
    - ①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의 최소화에 노력함
    - ② 이월금 중 구체적인 예산절감, 사업취소, 불용액 등의 교비회계 임여분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교육비에 지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중 장학금, 연구학생경비, 도서구입 순으로 우선 편성함
- 별 다른 질의가 없어 서영호 위원장이 전 위원 동의하에 제3호 의안인 임여금 처리 원칙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 8, 반대: 0)



### 제4호 의안) 2016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

- 기획부 조정우 부장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대하여 설명하다.

<간서명>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이성화 위원
	서영호	김석철	이성화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2016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778,000천원 중에서 법정부담전입금예정액 50,000천원을 제외한 728,000천원을 학교부담신청금액으로 요청하다.
-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서영호 위원장이 전위원회의 동의로 2016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가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8, 반대:0)

### 제5호 의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추천

- 서영호 위원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2 제2항에 의거한 간서명 대표위원을 추천한다.  

- 장윤식 위원이 간서명 대표위원으로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이성화 위원을 추천하다.
- 전 위원이 간서명에 대하여 동의하다. (찬성:8, 반대:0)
- 서영호 위원장이 2015학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간서명을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이성화 위원이 서명함을 선언하다.

### 다. 합의사항

- 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

<간서명>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이성화 위원
			

다.

-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2016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금액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2015학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간서명자로서,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이성화 위원을 간서명 위원으로 추대하다.

#### 라.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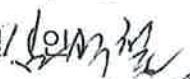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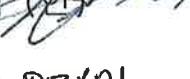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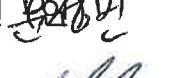
- 서영호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이성화 위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6. 1. 25

위 원 장 : 서 영호   
위 원 : 김석철   
위 원 : 신창욱   
위 원 : 장기효   
위 원 : 장윤식   
위 원 : 문정민   
위 원 : 이성화   
위 원 : 김근모 

위와 같이 심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6. 1. 25.

동의과학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이사본은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영도